

建設交通 常任委員會 會議結果報告

■ 제210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일차 건설교통위원회

□ 일 시 : 2013. 9. 2(월) 10:00 ~ 15:00

□ 안 건

1.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안
4. 학익3구역의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 요청에 대한 청원
5. 뉴타운 재개발 등 정비사업 매몰비용의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

□ 장 소 : 건설교통위원회 회의실

□ 참 석 : 7名(이도형, 이재병, 정수영, 김병철, 이재호, 전원기 의원)

※ 참석공무원 : 도시계획국장 박만희 외 30명

□ 부의안건

1. 인천광역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위원회 안건으로 채택

○ 질의 및 답변

- 예상되는 부작용에 대하여 검토한 바가 있는지? (정수영 의원)
⇒ 시행된지가 얼마 안되어 정확한 사례 파악은 없음.
- 조례의 내용에 대하여는 동의하나, 임대사업자의 임대계약 조건 등이 불합리해서는 안될 것임. (김병철 의원)
⇒ 문제가 없도록 하겠음.
-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나, 특정 동·호 지정에 대하여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특혜가 아닌가? (전용철 의원)
⇒ 문제가 될 소지는 있으나 운영을 잘 하도록 하겠음.
- 우선공급물량이 50%인 경우 여러 부작용이 있을 것임. (이재호 의원)
⇒ 운영과정에서 보완하도록 하겠음.
- 임대아파트와 동일한 것인가? (이도형 의원)
⇒ 다른 것임.
- 인천시 현안사업(도화지구)의 대책 마련 차원에서 찬성함 (전원기 의원)

2. 인천광역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보류

○ 질의 및 답변

- 정비사업에 투자한 기업들에 대한 책임은 없는 것인지? 투자한 기업들도 일정부분 책임을 져야 할 것임. (이재호 의원)
- 매몰비용에 대한 주민들의 어려움에 집행부 또한 책임을 지고 앞서가는 행정을 펼쳐가길 바람. (김병철 의원)
- 조례가 통과되면 인천시가 지출할 금액은 얼마나 되나? 타 지역의 지원 사례는? (이재병 의원)

⇒ 344억원 정도임. 서울시와 경기도에 일부 신청된 사례가 있음.

- 인천시가 책임을 질 경우 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 지자체, 기업, 주민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할 것임. (이재병 의원)
- 정비사업 등이 일부 공공성을 내포하고 있으므로 매몰비용에 대하여는 국가, 지자체도 일부 책임이 있을 것임. 또한, 조세 특례 제한법 일부개정안이 발의되어 심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개정안이 통과되면 매몰비용 문제가 다소 해결 될 수도 있을 것임. (전용철 의원)
-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시의 정책이 결정되어야 하며, 정부도 정책에 대한 책임이 있으므로 주민들에게만 모든 책임을 맡겨선 안될 것임. 현행법의 범위 내에서 시의 정책 의지를 표현할 수 있는 것이 동 개정조례안이라고 생각함. (정수영 의원)
- 조례의 취지대로만 운영이 된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나, 조합에 대한 매몰비용 문제도 벌써 불거져 나오는 등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우려가 됨. (전원기 의원)

3. 인천광역시 광역건축기본계획안

⇒ 원안가결

○ 질의 및 답변

- 기본계획의 마련은 긍정적으로 생각, 기후변화 대응 노력도 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전용철 의원)

⇒ 포함되어 있음.

- 신설 계획 중인 조직이 현 도시디자인추진단과 중첩되는 것은 아닌지? 위상과 역할 등을 잘 설정해야할 것임. (전용철 의원)

⇒ 현재 계획되어 있는 것

- 국가상징거리가 서울과 부산(사업중)에만 있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 인천 시에도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주시기 바람. (이재병 의원)

4. 학익3구역의 조속한 정비구역 지정 요청에 대한 청원

⇒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의결함

○ 질의 및 답변

- 용적률 288.16%가 가능한 것인지? (이도형 의원)

⇒ 법적으로는 가능한 것이나, 공감대 형성이 필요할 것임.

5. 뉴타운·재개발 등 정비사업 매몰비용의 국비지원 촉구 결의안

⇒ 원안가결

○ 질의 및 답변

- 없음.

일 시	차수	심 사 안 건	비 고
2013. 9. 3(화) 10:00	2	1. 2013년 행정사무감사계획의 건 2. 인천광역시 승용차부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인천광역시 교통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인천광역시 도시철도채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 교 위 건 설 교 통 국 " "

보고자 : 건설교통수석전문위원